

거창군의회(임시회)

제 97 회(폐회중) **산업건설위원회** 제 5 차(부록)

거창군의회사무과

목 차

1. 주상-가조-가북면군도(18호선)개설건의서	1 면
2. 레미콘·아스콘공장설치반대진정서	2 면
3. 중앙교지하차도설치공사문제점보고	4 면

주상 ~ 가북 ~ 가조면 군도(18호선) 개설건의서

1. 건의내용

- 건 의 자 : 주상면 손희병 외 2,615명
- 접수일시 : 2003. 3. 31.
- 건의요지 :
 - 거창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도 18호선인 주상면 내장포에서 고대를 거쳐 가북면 율리 용산으로 연결되는 도로 조속 개설 요망

2. 검토결과

- 본 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개설구간이 6km 정도이며 개설 공사비가 70여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거창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당장 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코자 함.

3. 참고자료

- 건의서 1부

레미콘·아스콘 공장설치 반대 진정서

1. 진정내용

- 진 정 인 : 남하면 무릉리 정수진외 141인
- 위 치 : 구 유남제사 공장부지
- 접수일시 : 2003. 3. 14.
- 진정요지 :
 - 구 유남제사 공장부지에 레미콘·아스콘 공장 설치를 반대
 - 공장부지에서 200m 지점에 상수도 취수구의 수질오염 및 고갈 우려
 - 소음, 분진, 매연 등 공해 발생 대형트럭 운행으로 사고 우려
 - 농지에 시멘트가루가 날려 농사에 지장을 초래
 - 남하초등학교와 접하여 자녀교육에 지장
 -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가축사육에 지장
 - 타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, 공해의 심각성을 확인

2. 집행부의 추진경과

- 진정서 접수 : 3. 12
- 민원인 회신 : 3. 14 (공장설립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법을 검토하여 처리)
- 공장설립신청서 접수 : 3. 15
- 신청서 보완 요구 : 3. 21(부지조성계획 설계도서 첨부, 위해방지와 환경오염 등 구체적인 계획, 진출입로 설치계획 등)
- 보완계획서 접수 : 3. 31 ○ 민원서류 처리기한 : 4. 12

- 부지면적 : 8,761m²(2,561평) ○ 건물 : 907m²(274평)
- 신 청 자 : 정순우
- 환 경 : 대기·수질 각 5종, 소음·진동·분진 - 신고 대상

3. 검토결과

- 지역주민에 반대한다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.
- 행정청이 공장설립 허가 처분을 했더라도 지역 주민이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 스스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는 사례는 있음.
- 그리고, 지역주민이 반대함으로 허가할 수 없다는 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은 행정쟁송(행정심판, 소송제기)을 제기할 소지가 많음.
- 따라서, 본 진정서는 공장설립 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된 진정이나 현재 공장 설립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사업계획과 공해배출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행정처분토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하고자 함.

中央橋 地下車道 設置工事 問題點 報告

중앙교 지하차도 설치공사 설계용역 결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.

I. 設置目的

- 거창시장내에 농산물 판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시장 내에서 생산농가가 직접 소매할 수 있는 공간(시장통)에는 일반 잡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,
- 간선 도로변에 무질서한 노점행위로 인하여 교통혼잡과 시가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중앙교 밑에 농산물 임시시장을 설치하여 소비자나 생산자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
- 농산물 임시시장 설치(안)
 - 위치 : 거창읍 중앙교 밑 둔치
 - 면적 : 1,000m²(300평 정도)
 - 수용가능 인원 : 200명 정도(1인당 1.5평)

II. 事業概要

- 공사명 : 중앙교 지하차도 설치공사
- 규모 : L = 240m, B = 4m
-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150일

III. 豫算現況

- 당초예산 : 148,650천원
 - 기집행액(용역비) : 6,879천원
 - 잔 액 : 141,771천원

IV. 問題點

- 당초 편성된 예산은 구배 10%, 연장 200m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둔치 진출입로에 준하여 공사비를 추정하여 계상하였으나,
- 중앙교 지하차도의 경우 설치 목적이 교통 소통의 원활 및 임시 시장 진출입 도로로서 이용하는 상인들 대부분이 노약자로서 손수레 등을 운행하기에는 급경사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
- 구배를 7%로 하향 조정 함으로써 연장이 240m로 늘어나 총공사비가 200,000천원으로서 기확보된 예산잔액 보다 58,229천원 증가로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실정임

⇒ 총공사비 : 200,000천원,

- 도급 예정액 : 150,238천원
- 관 급 액 : 38,799천원
- 폐기물처리비 : 10,963천원

V. 措置計劃

- 현재로서는 예산잔액이 부족하여 공사 발주가 불가하므로 설계비 6,879천원을 제외한 예산잔액 141,771천원과 태양광가로등 설치 예산 43,248천원을 합한 185,019천원으로 장마철 우기 전, 알루미늄난간(설치비 25,533천원)을 제외하고 공사를 선 발주하고
- 알루미늄난간은 설계변경 후 계약잔액으로 시행 및 태양광가로등 공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

VI. 協助 事項

- 부족예산 43,248천원(태양광가로등 설치 예산)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